

신흥로59번길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(긴급)

부천시 원미구(신흥로59번길)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5년 6월 20일

부 천 시 장

1. 행정예고명 : 신흥로59번길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(긴급)

2. 취지 및 목적

- 「주차장법」 제7조제3항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에 따라 우리시 원미구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의 안전문제 발생우려가 있어 일부폐지를 진행함. 이에 따라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폐지대상 : 총 7면 [총 19면 중]

연번	주차장 구역	위치	면수	비고
1	신흥로59번길(단성4길)	원미구 신흥로59번길	7면	

4. 공고방법 :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, 게시판

5. 관련근거
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주차장법 제7조(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)

6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5. 6. 20. ~ 2025. 6. 30.(10일간)

7. 의견제출

- 본 행정예고(공고)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기한 : 2025. 6. 30.(월)까지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○ 제출방법

- 1) 우 편 :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(중동)
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
- 2) 전 화 : 032) 625-4772 3) 팩 스 : 032) 625-4759